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결합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기술유통 사건의 지속 증가 및 누적에 따른 사건처리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는 등 '21년 소요정원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한편,

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운영 중인 협업정원 1명(5급 1명)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

총리령 제 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2021년 2월 28일”을 “2022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86”을 “48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3”을 “486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58”을 “160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보 “29”를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총계 “486”을 “48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3”을 “486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65”를 “167”로 하고, 행정주사보 “29”를 “30”으로 한다.

별표 6 중 제20조 “2021년 2월 28일”을 “2022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한시정원) 대 ·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 조제1항에 따라 <u>2021년 2월 28</u> <u>일까지</u>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며, 별 표 6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1 명)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.	제20조(한시정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2월 28</u> <u>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 계	.		.		.		
			<u>486</u>		<u>489</u>	+3	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<u>483</u>		<u>486</u>	+3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사무관			<u>158</u>		<u>160</u>	+2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주사보			<u>29</u>		<u>30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
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의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86</u>		<u>489</u>	+3	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<u>483</u>		<u>486</u>	+3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사무관			<u>165</u>		<u>167</u>	+2	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주사보			<u>29</u>		<u>30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
[별표 6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0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행정사무관	<u>존속기한:</u> <u>2021년 2</u> <u>월 28일)</u>	<u>존속기한:</u> <u>2022년 2</u> <u>월 28일)</u>	